

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23
----------	------

2016년 2월 25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6년 2월 15일, 김동율 의원(찬성자 12명)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17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6년 2월 25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동율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도로법」 전부개정(2014. 1. 14.)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번호를 반영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도로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불일치를 정비 함(안 제1조).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) 전부개정(2014.1.14.)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번호로 수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
- 현행 조례 제1조에서 동 조례 규정 목적에 인용한 법 제38조를 2014년 1월 14일 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61조로 변경 반영하고,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([표] 참조).

[표] 현행 및 개정안 비교표

현행	개정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도로법</u> 」 <u>제38조</u> 에 따라 서울특별시내의 육교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 절차, 방법 등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————— 「 <u>도로법</u> 」 <u>제61조</u> 에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----.
제3조 (사용허가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육교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홍보물의 홍보목적인 <u>행사등의</u> 계획서 1부 2. (생략) ③ (생략)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,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	제3조 (사용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----. 1 ————— <u>행사등의</u> ————— ---- 2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

홍보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옥외광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허가를 옥교사용허가로 본다.	
1. 홍보물의 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해당되는지 여부</u>	1. ----- <u>해당 여부</u>
2. 홍보물이 제6조에 <u>위반되는지 여부</u>	2. ----- <u>위반 여부</u>
3. 홍보물과 옥교 규격의 <u>일치하는지 여부</u>	3. ----- <u>일치 여부</u>
⑤~⑦ (생략)	⑤~⑦ (현행과 같음)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도로법」 제38조”를 “「도로법」 제61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행사등의”를 “행사 등의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제1호 중 “해당되는지 여부”를 “해당 여부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제2호 중 “위반되는지 여부”를 “위반 여부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제3호 중 “일치하는지 여부”를 “일치 여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법」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내의 육교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 절차, 방법 등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----- 「도로법」 제61조에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 (사용허가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육교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홍보물의 홍보목적인 <u>행사등의</u> 계획서 1부 2. (생략) ③ (생략)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,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홍보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옥외광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허가를 육교사용허가로 본다. 1. 홍보물의 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해당되는지 여부</u> 2. 홍보물이 제6조에 <u>위반되는지 여부</u> 3. 홍보물과 육교 규격의 <u>일치하는지 여부</u> ⑤~⑦ (생략)</p>	<p>제3조 (사용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행사 등의</u>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<u>해당 여부</u> 2. ----- <u>위반 여부</u> 3. ----- <u>일치 여부</u> ⑤~⑦ (현행과 같음)</p>